

수성 포레스트 스위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성포레스트스위첸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기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기본주택 방문은 수성 포레스트 스위트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하신분에게 한하여 기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청제(예비입주자 포함)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기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청자의 기본주택 관련, 당청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수있으며, 변경 시 수성 포레스트 스위트 홈페이지에 별도 예정입니다.
- 1. 기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기본주택 방문은 수성 포레스트 스위트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하신분에게 한하여 기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청제(예비입주자 포함)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기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입점 및 방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성 포레스트 스위트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2. 기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점이 제한됩니다.
 - 기본주택 입점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소독제, 비접촉결제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준수 사항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타(목도름 등)이 나타나 유증상자는 기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청자의 기본주택 관련, 당청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3일이다. (청약자격조건지정 기간 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지정 판단 기준일임이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비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입점 방식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기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기본주택 방문접수(온라인 방문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당첨 기일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에 의해 은행 영업일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신청서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현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토)하고 있고 신청자 기재사항이 모두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 - 초·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에 대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구분	내 용
1회/한정/지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청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지적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포함) 중 1인인 신청자(배우자, 공공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청자는 부적격당첨처리 제외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시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처리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공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인원주택)을 포함)의 당첨(인간 사전신청)을 포함) 제한 - 기간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추천 특별공급(국가공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함.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25477호(2022.05.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일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8길 11-9(파동)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15층, 17개동 총 75세대
- [특별공급 289세대(일반기주추천) 52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107세대, 노부모양 15세대, 생애최초 52세대 포함] 및 부대부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대층 수(상대면적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01	074.9485	74	74.9485	24,1270	99,0755	49,0766	148,1521	38,5493	18	1	1	3	-	1	6	12	2	
	02	077,0157	77	77,0157	25,9329	102,9486	50,4303	153,3789	39,6125	44	4	4	8	-	1	4	21	23	4
	03	084,4174A	84A	84,4174	26,5445	110,9619	55,2769	166,2388	43,4196	144	14	14	28	4	14	74	70	13	
	04	084,9610B	84B	84,9610	28,7096	113,6706	55,6329	169,3035	43,6992	196	19	19	39	5	19	101	95	19	
	05	084,8995C	84C	84,8995	28,7384	113,6379	55,5929	169,2305	43,6675	131	13	13	26	3	13	68	63	15	
	06	084,9594D	84D	84,9594	26,1159	111,0753	55,6318	166,7071	43,6983	16	1	1	3	-	1	6	10	3	
	07	096,2524	96	96,2524	29,0923	125,3447	63,0265	188,3712	49,5068	48	-	4	-	1	-	5	43	3	
	08	100,1967	100	100,1967	32,0314	132,2281	65,6093	197,8374	51,5355	10	-	1	-	-	-	1	9	1	
	09	101,8056	101	101,8056	32,6690	134,4746	66,6628	201,1374	52,3631	7	-	-	-	-	-	7	3	3	
	10	110,8207	110	110,8207	33,4768	144,2975	72,5659	216,8634	56,9999	36	-	3	-	1	-	4	32	3	
	11	112,9143B	112B	112,9143	40,9053	153,8196	73,9368	227,7564	58,0768	1	-	-	-	-	-	1	-	-	
	12	112,6000C	112C	112,6000	40,9349	153,5349	73,7311	227,2660	57,9151	5	-	-	-	-	-	5	-	-	
	13	114,9601	114	114,9601	36,7497	151,7098	75,2764	226,9662	59,1290	27	-	2	-	-	-	2	25	3	
	14	130,4967	130	130,4967	39,1277	169,6244	85,4499	255,0743	67,1202	13	-	1	-	-	-	1	12	1	
	15	142,9195B	142B	142,9195	50,4682	193,3877	93,5845	286,9722	73,5097	1	-	-	-	-	-	1	1	1	
	16	142,5867C	142C	142,5867	50,9683	193,5550	93,3666	286,9216	73,3386	6	-	-	-	-	-	6	-	-	
	17	155,7857	155	155,7857	49,6840	205,4697	102,0093	307,4790	80,1274	17	-	-	-	-	-	17	-	-	
	18	157,9370	157	157,9370	55,3698	213,3068	103,4180	316,7248	81,2339	15	-	-	-	-	-	15	-	-	
	19	160,6910	160	160,6910	55,4189	216,1099	105,2213	321,3312	82,6504	18	-	-	-	-	-	18	-	-	
	20	188,0502	188	188,0502	56,9226	244,9728	123,1363	368,1091	96,7224	1	-	-	-	-	-	1	-	-	
	21	206,3799	206	206,3799	65,9918	272,3717	135,3877	407,5104	106,1502	1	-	-	-	-	-	1	-	-	
					합계					755	52	63	107	15	52	289	466	72	

II 공급내역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예정 기간				
								(계약시 납입)	(계약후 30일 이내)	2022.10.19	2023.01.19	2023.04.19	2024.03.19	2024.06.19	2024.08.19					
74	18	1	2	211,999,406	216,490,594		428,490,000	10,000,000	32,849,000	42,849,000	42,849,000	42,849,000	42,849,000	42,849,000	42,849,000	128,547,000				
		2	2	223,913,210	228,656,790		452,570,000	10,000,000	35,257,000	45,257,000	45,257,000	45,257,000	45,257,000	45,257,000	45,257,000	135,771,000				
		3	2	228,677,742	233,522,258		462,200,000	10,000,000	3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46,220,000	138,660,000				
		4	2	233,442,274	238,387,726		471,830,000	10,000,000	37,183,000	47,183,000	47,183,000	47,183,000	47,183,000	47,183,000	47,183,000	141,549,000				
		5~9	10	238,206,806	243,253,194		481,460,000	10,000,000	38,146,000	48,146,000	48,146,000	48,146,000	48,146,000	48,146,000	48,146,000	144,438,000				
		1	4	217,204,274	221,805,726		439,010,000	10,000,000	33,901,000	43,901,000	43,901,000	43,901,000	43,901,000	43,901,000	43,901,000	131,703,000				
		2	4	229,409,986	234,270,014		463,680,000	10,000,000	36,368,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139,104,000				
		3	4	234,288,312	239,251,688		473,540,000	10,000,000	37,354,000	47,354,000	47,354,000	47,354,000	47,354,000	47,354,000	47,354,000	142,062,000				
		4	4	239,171,586	244,238,414		483,410,000	10,000,000	38,341,000	48,341,000	48,341,000	48,341,000	48,341,000	48,341,000	48,341,000	145,023,000				
		5~15	28	244,054,860	249,225,140		493,280,000	10,000,000	39,328,000	49,328,000	49,328,000	49,328,000	49,328,000	49,328,000	49,328,000	147,984,000				
		1	1	242,036,243	247,163,757		489,200,000	10,000,000	3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146,760,000				
		2	13	255,632,228	261,047,772		516,680,000	10,000,000	41,668,000	51,668,000	51,668,000	51,668,000	51,668,000	51,668,000	51,668,000	155,004,000				
		3	13	261,074,580	266,605,420		527,680,000	10,000,000	42,768,000	52,768,000	52,768,000	52,768,000	52,768,000	52,768,000	52,768,000	158,304,000				
		4	13	266,511,984	272,158,016		538,670,000	10,000,000	43,867,000	53,867,000	53,867,000	53,867,000	53,867,000	53,867,000	53,867,000	161,601,000				
		5~15	104	271,964,337	277,156,663		549,670,000	10,000,000	44,967,000	54,967,000	54,967,000	54,967,000	54,967,000	54,967,000	54,967,000	164,901,000				
		2	19	258,209,924	263,680,076		521,890,000	10,000,000	42,189,000	52,189,000	52,189,000	52,189,000	52,189,000	52,189,000	52,189,000	156,567,000				
		3	19	263,706,699	269,293,301		533,000,000	10,000,000	4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4	19	269,198,527	274,901,473		544,100,000	10,000,000	4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163,230,000				
		5~15	139	274,696,303	280,514,697		555,210,000	10,000,000	45,521,000	55,521,000	55,521,000	55,521,000	55,521,000	55,521,000	55,521,000	166,563,000				
		1	15	258,135,710	263,604,290		521,740,000	10,000,000	42,174,000	52,174,000	52,174,000	52,174,000	52,174,000	52,174,000	52,174,000	156,522,000				
		3	15	263,627,538	269,212,462		532,840,000	10,000,000	43,284,000	53,284,000	53,284,000	53,284,000	53,284,000	53,284,000	53,284,000	159,852,000				
		4	15	269,119,366	274,820,634		543,940,000	10,000,000	44,394,000	54,394,000	54,394,000	54,394,000	54,394,000	54,394,000	54,394,000	163,182,000				
		5~15	86	274,616,142																